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명

의안 번호	2360
----------	------

김재진 의원 (국민의힘, 영등포1)

-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김재진 위원입니다.
- 본 의원 외 39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
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- 「건축법 시행령」의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미반영된 조항을 현행화하고
일부 조문 내용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행정 효율성 및
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.
-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관련 법 개정 사항에 따라 현행화하였으며(안
제19조 및 제29조, 안 별표 1 및 별표 3), 조문 내용을 시민들이
이해하기 쉽게 정비(안 제33조)하였습니다. 또한 용어 순화, 띄어쓰기
및 조기 정정 등 미비 사항을 전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.
-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
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
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